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1 선고 2020가단52173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문옥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21. 10. 28.

판결 선고 2021. 11. 11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,320,345원 및 그 중 64,517,863원에 대하여 2020. 6. 4.부터 2020. 12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. 6. 12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. 9. 14.자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2019. 6. 13. 접수 제20143호로 말소등기된, 각 같은 법원 2018. 9. 18. 접수 제3524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, 다음,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문경훈

별지